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에 대한 고찰: 개념, 범주, 품질지표*

유 정 주
(한동대)

1. 연구의 필요성

법률번역학(Legal Translation Studies, LTS)은 서구에서도, 한국에서도 아직 신생 학문이다. 법언어 및 법해석, 비교법 연구의 일환으로 법률번역이 다루어진 것은 이미 19세기부터의 일이지만, 본격적인 LTS 연구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¹⁾. 초창기 서구 LTS의 주요 논의는 다른 전문번역 분야와 구별되는 법률번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규명하여 이를 독자적 학문 분야로 수립하려는 시도가 주를 이뤘다. 법률번역을 위한 텍스트 유형과 수신자 분류, 번역기능과 전략 분석, 법률번역의 목표 및 번역가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정의, 용어 불일치 문제와 등가의 판단 문제 등은 모두 LTS가 전제로 하고 있는 ‘법 언어의 고유한 특성’에서 파생된 기본적인 연구주제들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LTS가 번역학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1284).

1) 1997년 자르체비치(Šarčević)의 기념비적 저서인 “New Approach to Legal Translation”이 출판되고, 2000년 제네바 대학에서 법률번역학 국제학술대회인 “Legal Translation: History, Theories, Practice”가 개최되면서, LTS는 독자적 학문분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Prieto Ramos 2014a: 269-271).

과 법학, 언어학, 용어학의 학제 간 학문으로서 고유한 특성을 가진 번역학의 하위분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면서, LTS의 관심 분야 역시 언어적 차원의 연구를 넘어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10년간 서구 LTS의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제도번역으로 수행되는 법률번역, 즉 ‘제도 법률번역(institutional legal translation)’이다. 이전에도 법률번역은 주로 국가기관 차원에서 기관의 행위로서 수행되었지만, EU와 같은 초국적 기구의 출범과 함께 다언어 법제가 본격화되면서 법률번역의 이론들을 제도적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수불가결해졌다(Šarčević 2018: 10). ‘제도번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캐나다 연방정부 번역국이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번역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DGT) 같은 번역기관의 번역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출발하였고(강지혜 2012: 10), 이들 번역기관의 주요 번역 장르가 법률임을 고려한다면, 사실 서구의 주요 제도번역 논의는 LTS 내에서 이루어지고 발전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Koskinen 2014: 488).

초기의 제도 법률번역 연구는 EU 법령(규정, 지침, 결정 등)의 번역 품질 개선을 위한 대규모 용역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장르 또한 법령에 편중되었으나, 최근에는 판결문이나 각종 행정 문서에 이르는 연성규범(soft law)으로 대상 장르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초국적 번역기관 외에도 국가별 법제기관, 법원, 정부 부처와 같은 중소규모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법률번역을 언어적 명확성 보장과 국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살펴보는 연구들도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과 방법의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 법률번역 연구의 공통 목적으로 지목되는 것은 결국 해당 제도, 즉 기관의 번역 품질 향상이다(Prieto Ramos 2017: 214). 부적절한 법률번역은 개인이나 사적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법률번역의 품질이 낮을 경우 전반적인 법적 명확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관은 품질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투입된 예산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 필수적인 만큼 번역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향상 방안이 요구되며, 이는 기관의 번역 과정, 인력, 자원, 결과물 품질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촉발시켜 왔다.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된 법률번역 연구 역시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영역이나 외교통상부의 FTA 한글 번역 등 주로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진 번역 현상

이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지은, 최효은과 박혜진(2021) 등 극히 일부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기관의 번역에서 발견되는 일부 언어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장르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영역에 편중되어 있어, 제도 법률번역의 품질 향상을 위한 보다 다양한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법률번역 연구의 기본 토대가 되는 메타연구로서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에 대한 전체적 지형을 제시하는 연구나, 제도 법률번역의 핵심 품질지표 등 기관의 번역 품질 향상을 위한 전제가 되는 기본 사항들을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단일어 국가인 한국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법률번역이 규범 형성 목적이 아닌 법률커뮤니티를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 제작을 전제로 한 서구의 법률번역 논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즉,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에 관한 논의에는 다언어국가 또는 초국적기구를 통해 발전되어 온 기존의 법률번역 연구성과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에서 법률번역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도 법률번역의 장르 지형도를 규명하고, 이를 고려한 제도 법률번역의 품질지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도 법률번역에서 품질지표(quality indicators) 또는 품질변수(quality parameters)²⁾는 번역품질관리를 구성하는 거시 차원의 품질관리 원칙에서부터, 각종 품질지침 및 평가기준, 미시 차원의 언어 관련 지침까지 모든 차원과 관련된 번역품질의 핵심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 상황을 고려한 핵심 품질지표 도출을 목적으로 하여, 먼저 제도 법률번역의 개념 및 범주를 기타 번역과 구분하여 살펴보고, 제도 법률번역의 일반적 범주와 특성 규명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텍스트 유형 및 장르 분류를 시도한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및 DGT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해당 장르와 관련된 의사소통 목적에 따른 품질지표 간 우선순위를 합목적성(fitness for purpose) 관점에서 도출한 뒤,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 수행기

2) 품질지표 또는 변수는 번역품질평가(TQA)를 위한 평가기준이나 평가표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TQA를 위한 평가기준은 용어, 문법, 어휘응결성, 구문, 스타일, 목표언어권의 지역적 언어 특성, 문서 형식 등 다양한 언어적, 텍스트적 요소로 구성되는 반면(e.g. ISO 17100: 2015), 품질지표 또는 변수는 통상 정확성, 가독성과 같은 고품질 번역을 위한 핵심 요소를 의미한다(e.g. Biel 2017).

관이 발표한 품질지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점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주무 기관의 번역 품질지표 및 번역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제도 법률번역의 궁극적 이슈인 품질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제도 법률번역의 개념 및 범주

2.1 제도 법률번역: 제도번역의 개념과 범주

‘제도 법률번역’이란 ‘institutional legal translation’의 번역어로, 제도번역으로 수행되는 법률번역을 말한다. 제도번역과 법률번역은 전문번역의 핵심 영역으로, 특수목적 의사소통 중에서도 가장 도전적인 분야로 지목되어 왔다. 이들은 그간 번역학의 별도 하위분야로 연구되어 왔으나, 세계화와 초국가 기구의 설립으로 인해 민족 간 통합과 언어평등권 보장의 핵심으로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번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제도 법률번역’이라는 독자적인 용어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 법률번역’의 일반적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는 ‘제도번역’과 ‘법률번역’이 합쳐진 동 개념의 본질상, ‘제도’ 및 해당 ‘제도’와 관련된 법률번역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도출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할 제도 법률번역의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개념어를 구성하는 ‘제도번역’과 ‘법률번역’의 개념과 범주를 본고의 맥락에 따라 규정하고, 이를 대상 기관과 텍스트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 장르 유형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강지혜(2012)에 의해 ‘제도번역’으로 번역·소개된 ‘institutional translation’은 통상 ‘제도(기관)의 이름으로, 제도를 대리하여, 또한 제도를 위하여 수행되는 번역’으로 정의된다(Gouadec 2010: 36). 여기서 ‘제도(institution)’란 사회학에서와 같이 정부, 경제, 교육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도 정의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모든 번역행위가 제도번역에 해당할 수 있어 범주의 중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Koskinen 2014: 481). 또한, 제도번역은 번역가의 규범 행위의 정도가 해당 제도(기관)의 목적에 따라 좌우되는 규범

종속성을 핵심 특성으로 하는데(Sarčević 2018: 12), 법률번역은 기본적으로 해당 텍스트의 사용을 규율하는 법적 규칙에 종속되어있다는 점에서 모두 광의의 제도번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도 법률번역 관련 논의에서 제도번역이란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setting)에서 발생하는 번역’이라는 넓은 의미가 아닌, ‘특정 조직 내에서, 또는 특정 조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번역’으로, EU 같은 다국어 기구나 정부 부처, 국가기관 같은 구체적 제도로서의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번역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Schäffner, Traciuc and Tesseur 2014: 493). 즉, ‘제도 법률번역’의 목적상 제도번역은 구체적인 기관 환경에서 발생하는 번역을 의미하며, 이 경우 번역을 관리하는 기관은 ‘번역기관(translating institution)’으로 지칭될 수 있다(ibid. 494). 원형적 의미의 제도번역은 이러한 ‘번역기관’의 번역 서비스 부서에 의해 기관 내에서 제공되는 번역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제도 번역 관련 논의에서는 해당 기관의 발주 및 예산으로, 기관의 관리하에 외부의 에이전시 등에 아웃소싱되어 수행하는 번역도 ‘번역기관’이 수행한 번역으로 간주된다(e.g. Scott 2019).

특히, 제도 법률번역 관련 논의에서 ‘기관’은 회사, 로펌 등 상업조직으로서의 기관보다는, DGT나 외교부 같은 광의의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공시(connotations)를 지닌다. 이는 제도 법률번역의 목적 또는 기능이 법적 사실 수립, 권리·의무 창설, 입법준비, 이행감시, 사법·준사법절차 및 행정기능 등 정부의 각종 통치기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e.g. Prieto Ramos and Guzmán 2021). 제도번역 개념을 상황이 아닌 목적 중심으로 접근한 코스키넨(2014)은 제도번역의 본질을 ‘정부의 통치 수단으로서의 번역(govern by translation)’으로 정의하면서, ‘정부(government)³⁾’를 제도번역의 핵심 키워드로 도출한 바 있다. 코스키넨에 따르면 제도번역 가운데 입법, 사법, 행정 텍스트와 법률상 요구되는 2차 문서 등이 속한 법률번역은, 정부의 통치행위의 핵심인 규제(regulation)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번역의 핵심이다(ibid. 488).

제도번역은 기관이 관련 행위를 규율 및 통제하고, 준수 여부를 감시하며,

3) 여기서의 정부는 각국 정부(national government) 및 그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정부의 통치기능과 연관된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국제법의 규율 대상인 국가 간 기구나 초국적 기구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공유된 인지적 배경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의 규범, 행동방식, 번역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Wagner, Bech and Martinez 2002: 65). 또한, 집단적이고 무기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관 차원의 어휘, 문법, 스타일상 통일성 보장 문제가 대두되며, 이는 번역지침, 스타일가이드, CAT 툴, 교정절차, 멘토링 및 훈련 등을 통해 달성된다(Schäffner, Traciuc and Tesseur 2014: 494). 즉, 텍스트 간 표준화된 형식을 강제하여 표면 수준의 유사성을 달성하는 ‘표준화(standardization)’는 제도번역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특성으로 지목된다(Šarčević 2018: 14-15). 특히, 제도 법률번역의 경우 표준화는 단순한 제도번역의 특성이 아니라, 결과물 번역품질의 핵심지표 가운데 하나인 ‘일관성’ 달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 제도번역을 수행하는 법률번역가들은 이러한 표준화를 위해 해당 기관의 텍스트 작성, 번역 및 편집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도 법률번역가들에게는 독자적인 의사결정 및 창의적 번역의 여지가 매우 적다(ibid. 14).

2.2 제도 법률번역의 유사 개념

제도 법률번역은 통상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번역 주체(agent) 또는 의뢰인(client)이 되며 정부가 작성한 공문서⁴⁾를 주된 번역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번역(public service translation) 등 관련 개념과의 중첩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번역’은 커뮤니티번역(community translation)으로도 지칭되는데, 개념 정립 초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텍스트생산자의 언어로 된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주로 정보적 성격의 문어 텍스트 번역’으로 정의됐다(Niska 2002: 135). 그러나 최근에는 공공기관 외에도 대규모 커뮤니티(예: 사회)에서 소규모 커뮤니티(예: 종교단체, 이민자 모임)에 이르는 텍스트생산자가, 시민의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참여를 허용하기 위

4)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에 따르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하며(제3조1호), 헌법, 법률 등의 법령은 법규문서로, 훈령, 지시, 예규 등 행정규칙은 지시문서로, 고시, 공고 등은 공고문서로, 각종 민원 관련 문서는 민원문서로서 각각 공문서에 속한다(제4조).

한 목적으로 생산한 모든 문서의 번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대됐다 (Taibi 2011: 214). 그러나 공공서비스번역의 경우 정부기관 외에도 비영리단체, 개인 등 다양한 자가 번역주체가 될 수 있고, 수신자 역시 주로 공공서비스 및 주류언어에 대한 완전한 구사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이나 외국의 법률전문가 등을 수신자로 하여 (정부)기관의 통제를 받아 이루어지는 제도 법률번역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제도 법률번역은 목표국가에서의 법적 유효성 인증을 목적으로 주로 선서번역사(sworn translator)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식번역(official translation)’ 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공식번역의 경우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번역주체나 의뢰인이 아닌 (최종) 수신자가 되며, 학생, 소송당사자, 변호인 등 다양한 개인이 번역의뢰인이 된다는 점에서 제도 법률번역과 개념상 차이가 분명하다 (유정주 2017). 그러나 공식번역은 법률번역의 지위와 관련하여 정부나 국제기구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작성한 공식본으로서의 번역을 지칭하기도 하므로 (Šarčević 1997: 20)⁵⁾, 맥락에 따른 개념 구분이 요구된다.

한국의 경우, 제도 법률번역의 개념과 관련하여 정호정(2013)이 제시한 ‘공공번역(public sector translation)’과의 유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 연구에 따르면 ‘공공번역’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국가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번역으로, 그 결과물을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 공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번역’으로 정의된다. 공공서비스는 한국 법⁶⁾에서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와 같이 기능 중심으로 정의되기도 하나, 통상 공공주체에 의한 공익적 활동 모두를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이다(진훈 2022: 48). 따라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거나 법령 또는 관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하는 모든 법률번역은, 공공주체

5) 자르체비치(1997: 20)에 따르면, 규범적 법률문서의 번역본이 해당 국가의 입법기관에 의해 법률의 일부로 채택되어 법적 효력을 갖는 경우는 정본(authoritative text) 또는 정본번역(authoritative translation)으로, 해당 국가가 서명은 했지만 법률로 채택하지는 않은 번역본은 공식본(official text)으로,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작성한 번역본은 공식번역(official translation)으로 분류된다.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5호

에 의한 ‘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 ‘공공번역’으로 이루어지는 제도 법률번역의 경우 정부의 정기적인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성’에서 파생된 ‘비용효율성’과 서비스 제공의 ‘적시성’ 여부가 번역 품질지표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즉, 제도 법률번역은 공공의 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목적상, 해당 번역의 수신자 및 이해관계자의 명시적·잠재적 기대에 부응하고 그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DGT 2015: 1).

2.3 제도 법률번역: 법률번역의 텍스트 유형과 범주

제도 법률번역을 이렇게 정부의 통치기능의 일환으로서 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수행되는 법률번역으로 규정할 경우, 다음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는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법률번역’의 범주일 것이다. 이러한 범주는 결국 유사한 형식, 스타일, 내용을 공유하는 텍스트 그룹을 의미하는 ‘텍스트 유형(text type)’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Biel 2018: 168). 법률텍스트는 일반적으로 ‘법적 상황에서 법적 목적으로 생산되거나 사용되는 텍스트’로 정의되며(Cao 2010: 78), 1) 법률, 조약, 2차 입법 등의 법령, 2) 법관 및 사법당국이 사법 과정에서 생산한 판결문 등 사법텍스트, 3) 법학자, 변호사 등이 생산한 법학텍스트 및 논평, 4) 계약서, 송무문서 등 변호사가 작성한 사법(private law) 영역의 법률텍스트 및 일반인이 작성하여 소송이나 기타 법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문서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Cao 2007: 9-10). 이 가운데 본고에서 다루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제도 법률번역의 대상이 되는 법률텍스트는 주로 1)과 2)의 유형일 것이다. 해당 기관이 3), 4)와 같은 학술텍스트나 사법 영역의 텍스트를 번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주로 내부 참고용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로 이루어지는 본고의 제도 법률번역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본고의 제도 법률번역에 대한 논의는 텍스트 유형으로는 조약을 포함한 법령과 법원이 생산한 판결문 등의 사법텍스트로 한정된다⁷⁾.

7) 그러나 실제로 기관이 다루는 제도 법률번역의 범주는 훨씬 다양할 수 있다. 일례로 UN, WTO, EU와 같은 정부 간 국제기구(IGOs)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을 법적 맥락에 따라 유형화해본 결과, 법률, 판결문 등 입법 장르(law-making genres) 외에도 다양한

즉, 본고에서 ‘제도 법률번역’은 정부의 통치수단의 일환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법률번역, 즉 정호정(2013)이 제시한 ‘공공번역’의 범주로 이루어지는 법률번역을 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산발적이거나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법률번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원형적 의미의 ‘번역기관’에 의해 상시적이거나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번역을 다루고자 한다.

2.4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 현황

이렇게 제도 법률번역의 개념 및 범주를 규정할 경우,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 현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단일이 국가인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 환경에서 정보번역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기관으로 하는 조약 한글본 제작이 유일하다.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보 목적의 번역으로, 규범텍스트의 번역으로는 법령과 판례의 한국어 방향(BA) 및 외국어 방향(AB) 번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법령 번역의 경우, BA 번역으로는 국회도서관이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외국 입법례를 한글로 번역하는 ‘외국법률번역⁸⁾’ 사업과, 한국법령정보원이 한국의 투자자, 기업 등을 위해 세계 각국의 주요 법률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서비스⁹⁾’가 있다. AB 번역으로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외국의 투자자, 기업 등에게 한국 법령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한

입법준비, 이행감시, 절차 및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2차 장르 및 분쟁해결보고서 등 기타 법률장르의 번역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Prieto Ramos 2017). 이는 제도 법률번역이 대상으로 하는 법률번역의 개념을 경성규범(hard law)만을 의미하는 좁은 개념으로 한정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연성규범(soft law) 및 기타 정책 입안 및 후속 이행까지 고려하여 ‘준법률(quasi-legal)’이나 ‘행정’까지 확장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Prieto Ramos and Guzmán 2021: 270).

- 8) ‘외국법률번역’은 국회 내부 및 일부 외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되었으나, 2019년 1월부터 외부 공개되어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https://law.nanet.go.kr/foreignlaw/foreignIndex/search.do?isMenu=Y>).
- 9) 한국법령정보원이 법제처의 수탁을 받아, 한국 국민과 중소기업, 정부기관의 해외진출 및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를 수집·번역하는 사업이다(<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글 법령을 영어로 번역하는 ‘대한민국 영문법령’ 사업이 대표적이다. 판례 번역의 경우, AB 번역으로는 법원도서관이 외국의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대법원 주요 판결과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영문판례집10)’과, 헌법재판소가 역시 외국의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주요 헌재결정례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영문판례’ 사업을 들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 특허법원이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특허법원 영문판결11)’ 사업 역시 AB 방향의 판례번역에 해당한다. BA 번역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한국의 법률전문가들에게 외국의 주요 헌법재판 판례 등을 한글로 번역·발간하는 ‘외국 헌법재판자료 번역집12)’사업이 있다. 이들 번역은 정본은 아니지만, 민간조직이나 출판사가 아닌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제공하는 번역이라는 점에서 TT의 지위상 모두 공식번역에 해당한다. 아래 <표 1>은 본고의 연구 대상인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의 현황을 주무기관과 번역의 지위, 목적, 수신자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표 1> 번역목적과 수신자에 따른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 분류

구분	번역 방향	주무기관	TT의 지위	번역 목적	의도된 수신자
조약	BA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정본	법률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정본으로서의 한국어본 작성	(한국의) 일반 국민
법령	BA	국회도서관	공식 번역	특정 사안에 대한 외국 입법례를 소개하여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	(한국의) 국회의원 및 일반 국민

- 10)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률문화의 국외 홍보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영문으로 번역, 출간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법원 및 법원도서관 영문홈페이지 등에서 서비스되고 있다(<https://library.scourt.go.kr/base/eng/main.jsp>).
- 11) 특허법원은 2020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판결문 공유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의 주요 IP 판결에 대한 영문 번역을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영문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https://patent.scourt.go.kr/IP/Main.work>).
- 1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254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외국의 주요 자료를 국문으로 번역하는 사업으로, 헌법재판소도서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https://library.ccourt.go.kr/#/>).

	BA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 센터)	공식 번역	한국의 투자자, 기업 등에게 외국 법령에 대한 정보 제공	(한국의) 일반 국민
	AB	한국법제연구원	공식 번역	외국의 투자자, 기업 등에게 한국 법령에 대한 정보 제공	(외국의) 일반 국민
판례	AB	법원도서관, 헌법재판소	공식 번역	외국의 법률전문가들에게 한국의 주요 판례에 대한 정보 제공	(외국의) 법률 전문가
	BA	헌법재판소	공식 번역	한국의 법률전문가들에게 외국의 주요 헌법재판에 대한 정보 제공	(한국의) 법률 전문가
	AB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 권법연구센터)	공식 번역	외국의 IP/법률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주요 IP 판례에 대한 정보 제공	(외국의) IP/법률 전문가

이제부터는 선행연구 등의 분석을 통해 상기와 같이 논의한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의 결과물 품질지표를 도출하고, 번역목적과 TT의 지위 등을 고려한 적용 시 시사점을 합목적성 관점에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3. 제도 법률번역의 품질지표에 관한 논의

3.1 제도 법률번역의 핵심 결과물 품질지표: 정확성, 일관성, 명확성

LTS에서 법률번역의 결과물 품질지표는 크게 ST 중심의 ‘정확성’과 ‘일관성’, TT 중심의 ‘명확성’과 ‘가독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학자들마다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는 있으나, ST와 관련한 주요 품질지표로는 등가, 충실성, 정확성, 신뢰성, 다른 언어본과 관련한 언어 간 일치 및 텍스트 내·외의 일관성 또는 연속성을 의미하는 언어 내 조율 등이 지목되어 왔다(e.g. Šarčević 2018). 반면, TT 관련 품질지표로는 번역의 명확성 또는 가독성과, TL 비번역텍스트와의 일치성과 관련한 텍스트일치성(textual fit) 등이 논의되어 왔다(e.g. Biel 2014). 비엘(2017: 35)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각종 번역품질 관련 지침을 분석한 결과, EU 번역으로서의 제도 법률번역 품질지표는 ‘정확성’, ‘일관성’, ‘명

확성'으로 수렴된다고 지적했다. 즉, 일반적으로 제도 법률번역의 핵심 결과물 품질지표는 법률번역의 일반적인 결과물 품질지표와 유사하게 제시된다(표 2 참조).

〈표 2〉 (제도) 법률번역 핵심 품질지표

구분	정확성(accuracy)	일관성(consistency)	명확성(clarity)
핵심 개념	ST(또는 다른 언어본)와의 관련성	이전 텍스트 및/또는 상위텍스트와의 관련성	해당 비번역 텍스트와의 관련성
대체 용어	ST 지향성, ST에 대한 충실성, 신뢰성, 등가, 대응 ¹³⁾ , 언어 간 일치	연속성, 언어 내 조율, 표준화	TT 지향성, 텍스트 목적에 대한 충실성, 충분성, 텍스트일치성, 가독성, 유창성, 자연스러움, 독자 친화성
관련 개념	완벽성(누락이나 추가 없음), 수평적 차원, 동등한 정보 원칙, 다언어 평등성 원칙, 강제적 법적 등가	용어 일관성, 수직적 차원, 참고문서와의 일관성, 번역지침과의 일관성	접근성, 예측성, 현지화, 알기 쉬운 언어쓰기 운동, 목표문화 법제관습 존중

법률번역의 '정확성'이란 일반번역에서 논의되는 '언어적 등가'가 아니라, 언어본 간 동일한 법적 효과를 생산하도록 번역하는 것, 즉 '법적 등가'의 달성을 의미한다(Šarčević 2018: 192-193). 법적 등가는 내용, 의도, 법적 효과가 종합된 개념이지만, 법률 언어 간 불일치로 인한 의미의 상충으로 '동일한 의미'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효과의 등가' 달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정확성의 기준이 된다(Šarčević 2012: 192). 즉, 법적 등가는 실제 의미상 등가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언어본이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다고 가정된 사실'로 인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등가(existential equivalence)

13) 법률번역의 경우 사전 등에서 제시하는 의미상 등가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적이고 고정된 개념인 '등가'보다 번역가의 전문적 의사결정을 반영한 보다 유연한 개념인 '대응(correspondence)'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e.g. Prieto Ramos 2015: 20).

또는 강제적 법적 등가(mandatory legal equivalence)¹⁴⁾로 이해될 수 있다(Biel 2017: 37). 다언어 법령과 같은 정보번역에서 등가는 ‘언어 간 일치(multilingual concordance)’ 또는 ‘수평적 차원’으로도 지칭되며, 동등한 정보 원칙이자, 다언어 평등성 원칙과도 관련되는 개념이다(유정주 2019).

다음으로, ‘일관성’이란 단일어나 복합어뿐만이 아닌 법률텍스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구소인 어구(phrase) 등을 포함하는 ‘용어’의 일관성 또는 언어 일관성을 의미한다(유정주 2019: 174). 특히, 조약과 같은 정보번역의 경우에는 국제법과 국내법 간 조율과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 주무기관 뿐만이 아닌 모든 정부기관의 관련 절차에서 하나의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수립된 ‘제도적 용어(institutional terminology)’의 사용을 준수해야 한다(Prieto Ramos 2014b: 319). 이러한 제도적 용어는 하나의 개념당 하나의 용어로 마련되어야 하며, 동의어 사용이나 재구성(reformulations) 방식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DGT 2015: 5). 동일 개념을 지칭하는데 여러 법령에서 다른 용어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 단일 용어의 정착이 지연될 뿐 아니라 법원의 해석과정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Prieto Ramos 2015: 320).

이러한 일관성 지표는 ‘언어 내 조율(intralingual harmonization)’ 또는 ‘수직적 차원’으로도 지칭되며(유정주 2019: 177), 해당 텍스트 내·외의 용어 간 일치 외에도 해당 기관이 수립한 번역지침, 스타일가이드, 템플릿, 번역메모리 등 기존 관행과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DGT 2015: 5; Prieto Ramos 2014b: 314). 즉, 정보번역에서 일관성이란 해당 텍스트, 이전 텍스트, 상위텍스트와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해당 기관이 수립한 각종 지침 및 전례에 대한 준수를 의미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수의 번역가가 공정별 시간 제약 아래서 작업하는 제도 법률번역의 경우, 용어 및 스타일, 해당 기관의 기존 관행의 일관성 달성 수준, 즉 표준화의 수준은 번역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마지막으로, 법률번역에서 ‘명확성’은 단순히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애매성¹⁵⁾이 없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14) ‘의제(legal fiction)’를 통한 법적 등가의 가정을 의미하며, 해당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유정주(2020: 68-69)를 참조할 수 있다.

15) 애매성(ambiguity)은 다의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하나의 단어, 구, 문장이 한 가지 이

을 의미한다(Stefanou and Xanthaki 2008: 10). 명확성은 수법자가 허용 및 금지 행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 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자의적인 법 집행을 예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법제 원칙과 관련된다(국회법제실 2019: 51). 이는 흔히 알기 쉬운 언어사용과 관련한 ‘가독성(readability)’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법 언어의 본질과 목적상 가독성과 동일하지 않거나 심지어 상충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해당 법률텍스트가 전문가를 수신자로 하여 고도로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오랜 기간 수립된 사법적 판단에 의한 해석을 요하는 경우, 가독성은 오히려 명확성을 훼손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Filson and Strokkoff 2008: 96-97). 즉,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명확성의 객관적 기준은 존재할 수 없으며, 수신자의 역량과 텍스트의 목적에 따른 의사소통의 효율성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McLeod 2009: 4).

일례로 일반 국민을 수신자로 하는 조약 등 정보번역의 경우, 법적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해당 텍스트를 애매성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가독성 높은 번역이 명확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반면, 법원이나 법률전문가들을 직접 수신자로 하는 판결문 번역의 경우, 알기 쉬운 언어의 사용은 법률 해석 과정을 오히려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있으므로, 판례법을 통해 법적 의미가 확립된 라틴어 등 전문 법률용어(legalese)의 사용이 오히려 명확성을 높인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Alcaraz and Hughes 2002: 15). 특히, 정보번역에서 가독성을 목적으로 내용이 변경되거나 애매성이 야기될 경우, 법제 의도를 왜곡할 경우, 적용 범위가 변경되거나 법적 효과의 동일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한 해석 및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Šarčević 1998: 289). 이에 따라 명확성 지표는 가독성, 유창성, 자연스러움과 동일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텍스트 목적에 대한 충실성’이나 법적 조건, 비교법, 법 해석 규칙에 대한 의존을 통한 법원(legal sources)에의 준수가 강조된 ‘충분성(adequacy)’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Prieto Ramos 2015: 14).

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를 지칭하며, 모호성(vagueness)과 함께 법적 불명확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지적된다(유정주 2012: 3).

3.2 제도 법률번역의 품질지표 적용 시 고려요소

이러한 텍스트 목적 중심의 접근은 ‘명확성’ 지표 외에도, ‘정확성’, ‘일관성’ 등의 핵심지표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학자들은 ST의 법적 지위와 소통 목적이 TT에 자동적으로 전이되지 않기 때문에, TT의 기능과 지위 등에 근거한 법률번역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품질지표와 번역전략이 설정될 수 있다고 본다(Cao 2007: 10). 법률번역의 경우 스킴포스이론과 달리 번역의뢰인이 TT의 소통기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Sager 1997: 28), TT의 법적 지위, 즉 법적 구속력의 유무가 번역의 기능 및 목적을 결정한다(Šarčević 1997: 19). 즉, ST의 기능이 ‘규범 형성’으로 동일한 법령을 번역하는 경우에도, TT의 법적 지위가 법적 효력을 갖는 정보인지 비정보인지에 따라 번역의 목적과 기능은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규범적 목적의 정보번역의 경우 ST와 TT의 소통기능은 동일하지만, 정보적 목적의 법률번역의 경우 ST와 TT의 기능은 각각 ‘규범 형성’과 ‘정보제공’으로 동일하지 않다(표 3 참조).

〈표 3〉 TT의 지위와 소통목적에 고려한 법률번역 분류(Cao 2007: 10)

소통목적	ST의 텍스트 유형	ST의 목적	TT의 목적	TT의 지위
규범적 목적의 법률번역	국내법, 조약	법적 사실 수립 및 권리·의무 창설	법적 사실 수립 및 권리·의무 창설	정본
(기술적 성격을 가진) 정보적 목적의 법률번역	(단일어 국가의) 법령, 판결문, 학술자료 등	법적 사실 수립 및 권리·의무 창설, 또는 사법·준사법 절차 수행, 또는 정보제공	정보제공	공식번역 또는 비공식 번역
(주로 정보적이지만) 기술적인 법률번역	진술서, 계약서, 소답, 각종 서신, 기록자료, 증명서, 증언서, 감정서 등	사법절차에서 서증으로 사용	사법절차에서 서증으로 사용, 또는 정보제공	TT의 용도에 따라 상이

한국과 같은 단일어 국가의 경우 국내법의 번역은 규범 목적이 아닌, 국내

외의 법학자 및 기타 분야의 학자, 비즈니스 및 법률 커뮤니티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단일어 국가의 국내법 번역은 해당국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작성한 공식번역, 또는 법률 분야 출판사나 법학연구소가 생산한 비공식번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모두 해당국 및 기타 사법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Cao 2010: 85; Šarčević 1998: 20)¹⁶⁾. 즉, 단일어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법규범을 형성하는 정본번역이 아닌 정보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식 및 비공식 번역의 경우, 의도된 수신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가독성과 같은 명확성 지표가 보다 강조될 수 있다. 특히 한국어와 같이 영미권 수신자에게 상대적으로 ‘낯선(exotic)’ 언어의 경우, 국내법의 번역은 외국 투자자들이나 사업가들에게 국내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명확한 번역은 품질의 핵심 요소가 된다(Biel 2007: 152). 이에 따라 정보제공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내법의 번역은 정본번역에 비해 번역가에게 넓은 재량이 부여될 수 있으며, 스위스 민법(ZGB)의 영어 번역 사례와 같이 각주나 장문의 설명이 허용되기도 한다(Šarčević 2012: 191). 반면, 일반인이 아닌 법률전문가를 수신자로 하는 사법기관의 판결문 등의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보 목적의 번역이라 하더라도, 최대한의 정확성과 기존 선행에 수립된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관성이 핵심 품질지표가 된다(Prieto Ramos 2015: 22).

또한 상기와 같이 번역의 기능에 따라 TT 중심의 품질지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에도, ‘우아하고 실용적인 번역’을 산출하기 위한 가독성 원칙의 적용은 ‘용인 가능한(permissible) 수준의 명확성’ 달성을 위한 정도로 한정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Hammel 2008: 275). 자르체비치(Šarčević 2012: 191)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내법 번역의 경우 번역가에게 보다 넓은 재량이 부여될 수 있다면서도, 국가 간 소송이나 국제 상업 중재 과정에서 외국법을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참고 목적의 규범 텍스트 번역 역시 가능한 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번역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통법 국가 판사들의 외국법 해석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판결문, 소답, 진술서와 같은 법원 문서의 번역 품질은 정확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

16) 이에 따라 공식번역과 비공식번역의 경우, 외국의 사법절차에서 해당 번역본이 사용됨으로써 발생 가능한 번역오류에 대한 책임 면제를 위해 ‘책임 한계에 대한 법적고지(disclaimer)’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Šarčević 2012: 191).

며, 원문의 단어와 형식을 최대한 재현하는 ST 중심의 품질지표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3.3 DGT 번역 품질지표의 시사점

정본번역에 비해 정보적 목적의 번역 품질지표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번역품질지침(DGT 2015)은 번역의 목적에 따른 품질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과 같은 단일어 국가에서 제도번역으로 수행되는 정보 목적의 법률번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U 가입국의 증가로 인해 번역 비용, 수요, 품질 간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긴요해지면서, 최근 EU 기관들의 번역품질 관련 담화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즉, 모든 EU 번역에 대해 정본번역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해당 장르와 관련된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 관련 품질 요소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EU 기관들은 번역학의 장르 관련 개념을 차용하여, 문서의 종류와 품질수준을 연결시키는 명시적 담화를 내놓고 있다. 이는 번역품질에 대한 함목적성 접근을 통해 번역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품질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자원을 요구된 품질수준에 맞추어 관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Biel 2017: 35, 39).

DGT(2015)의 번역품질지침은 번역의 목적과 관련 (오류) 위험에 따라 EU 번역을 4개 범주의 텍스트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각기 다른 수준의 품질지표를 적용한다(표 4 참조). 이 가운데,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 상황과 관련하여 범주 A와 범주 D의 텍스트 유형과 관련 품질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범주 A는 정보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률문서’로서 정본번역에 해당하며, 범주 D는 ‘EU 법령, 정책 입안 및 행정을 위한 자료제공 문서’로, 범주 A의 법률문서를 정보제공 목적으로 번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표 4〉 DGT(2015)의 텍스트 유형 구분

구분	범주	텍스트 유형
범주 A	법률문서	1. 법령: 조약, 명령, 지침, 결정, 권고, 의견, 국제협약 2. 행정 또는 사법 절차 및 조사에 사용되는 문서: 침해, 합병, 반독점, 국고보조, 반덤핑 사건 등에 관한 법원

		제출서면, 공식 통지서, 의견서, 이의신청서 등 3. 조달 또는 예산 지원 프로그램 관련 문서, 입찰, 각종 정부지원금 신청서 및 계약서 4. 채용공고 및 EPSO 등 공채시험 관련 문서
범주 D	EU 법령, 정책 입안 및 행정을 위한 자료제공 문서	1. EU 법령 시행을 위한 회원국 법령 2. EU 법령, 절차 등의 준비를 위한 COM 정책에 대한 회원국의 정치적 의견서 3. EU 법령상 제출이 의무화된 회원국의 보고서 4. 인증 등을 위한 회원국의 의무화된 통지서 또는 국가 계획 신청서 5. 집행위원회의 정보 또는 지원 요청에 따른 회원국의 답변서 6. NGO, 회사, 옴부즈만 등 기타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수신한 문서 7. 시민들로부터 수신한 서신, 정보용 뉴스기사 8. EU 회원국 외의 국가 또는 외부 단체 등으로부터 수신한 문서나 서신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에서 범주 A에 해당하는 문서는 FTA 등 각종 조약의 한글본이다. 범주 A에 해당하는 ‘법령(legal acts)’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문서로, 일반 시민 또는 법원을 수신자로 한다. 조약이나 규정, 지침, 결정 등 EU 법령을 구성하는 모든 언어본은 동등한 정보으로서, 언어본 간 동일한 의미와 법적 효과를 생산하도록 번역하는 것, 즉 법적 등가의 달성이 핵심 품질요소가 된다. DGT(2015: 5)는 또한 범주 A에 해당하는 법률 문서들의 경우, 동일 텍스트 내 용어 일관성과 상위법 및 동일 위계의 다른 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한다. 즉, 법적 등가 달성으로 표현되는 ‘정확성’과, 해당 텍스트 내·외 법령과의 ‘용어 일관성’은 DGT가 제시하는 정보번역의 핵심 품질지표라 할 수 있다.

또한 범주 A 문서 가운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언어법령의 경우, 명확한 언어 또는 독자친화성과 관련한 품질요소 또한 준수되어야 한다(DGT 2015: 6). 특히 최근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법적 명확성(legal certainty)’을 EU 법령의 기본 원칙으로 인정하고, ‘자연인이나 기타 사인(private parties)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 이에 영향받는 자들이 동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유럽연합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즉, 다언어법령과 같은 정보번역의 경우 법적 명확성의 달성이 인간의 사안이 되면서, 해당 텍스트 제작에 참여하는 제도 번역가들은 동일한 법적 효과뿐 아니라 법적 명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히 명확한’ 언어를 사용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Šarčević 2018: 17-18).

그러나 범주 A에 해당하는 정보번역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수준이 TL 관습에 맞추어 현지화하거나, 원문처럼 읽히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Biel 2017: 37). 즉, ‘언어적 순수성’은 ‘법적 등가’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양자 간 균형이 어려울 때는 ‘언어 간 일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Šarčević 1997: 203). 따라서 정보번역의 품질목표는 자연스러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정확성과 법적 효과 측면에서 최대의 충분성을 달성하는 것이며, 해당 품질변수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어야 한다(Prieto Ramos 2014b: 325). 또한 명확성과 유창성은 번역 품질에 핵심적 영향을 주는 원문 작성의 품질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Prieto Ramos 2015: 22-23), ST의 품질 개선 노력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반면, 범주 D는 EU 법령, 정책 입안 및 행정을 위한 자료로 기능하는 문서들이다. 동 문서들은 범주 A 등의 공식 절차와 관련하여 EU 회원국이나 기타 외부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서들로, 내부 사용 목적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DGT(2015: 16)는 범주 D의 문서들을 편의상 8가지 종류로 구분했지만, 실제로는 범주 A, B, C에 속하는 문서라도 법령이나 정책 입안 등을 위해 참고 목적으로 번역된다면 범주 D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법적 효력을 갖는 정보번역으로서의 EU 법령이 아닌, EU 법령 시행을 위한 자료가 되는 회원국의 법령은 범주 D로 분류된다. 또한 회원국의 판결문 등 법적 절차 및 조사(legal proceedings and inquiries)에 사용되는 문서들도 EU 법령이나 정책 입안을 위한 자료로 번역되는 경우는 범주 D에 해당한다. 이렇게 범주 D는 주로 규범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의 법률번역에 대한 품질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일어 국가인 한국의 법령 BA, AB 번역이나 판결문, 결정문 등의 AB 번역에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DGT(2015: 16)는 범주 D에 속하는 문서들의 경우, 해당 문서의 장르가 속한 원래의 범주에 적용되는 것과 대체로 동일한 기준과 품질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판결문 등 범주 A.2에 속하는 법적 절차 및 조사 관련

텍스트 유형의 경우, 정보제공 목적으로 번역되더라도 범주 A와 유사한 품질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범주 D의 문서들의 번역목적과 오류 위험 등은 범주 A와 다르므로,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품질요건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일례로 회원국 법령 번역의 경우 분석 및 참고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역 오류로 인한 법적 위험은 간접적이며, 해당 번역은 적용가능한 법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주 D의 문서들은 품질지표 면에서 언론홍보자료, 브로셔 등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제공 문서인 범주 C보다는 정확성이 강조되지만, 범주 A보다는 자연스러움이 강조된다(Biel 2017: 38).

그러나 범주 D에 속하는 문서 중에서도 법령 및 법적 절차 관련 문서들의 경우 오역과 관련한 위험이 대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범주 A1, A2와 동일한 수준의 품질 보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DGT 2015: 17). 또한, 범주 D 문서들의 품질 요건은 해당 문서의 외부 공개(publication)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즉, 외부에 공개되는 번역의 경우 해당 문서의 장르가 속한 범주 A, B, C에 규정된 품질 요건을 (대체로) 동일하게 적용하되, 내부 사용 목적으로 번역되는 경우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품질 요건이 적용 가능하다(DGT 2015: 17). 즉, 참고 목적으로 번역되는 제도번역 텍스트 유형 가운데 외부에 공개되는 공식번역으로서의 법령이나 판결문 등의 경우에는, 정보번역과 대체로 동일한 품질지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래 <표 5>는 상기와 같이 논의된 DGT(2015) 번역품질지침상 품질지표를 적용 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표 5> 법률번역의 결과물 번역품질지표 및 우선순위

구분	텍스트 유형	핵심 내용
규범 목적의 번역	조약	정확성, 일관성 > 명확성
참고 목적의 번역 (외부 공개용)	법령	명확성=정확성=일관성
	판례	정확성, 일관성 > 명확성

4.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 품질지표 사례분석

이제부터는 상기에서 제시한 제도 법률번역의 품질지표를 한국의 상황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정보번역의 품질지표 사례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정보번역인 협정, 약정 등 각종 조약 한글본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기관이지만¹⁷⁾, 2023년 1월 현재 이들 기관이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명시적인 조약 한글본 작성지침이나 품질지표는 찾아볼 수 없다. 2011년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번역오류 사태 이후 마련된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98호)에 따르면 한글본 작성은 외교부 조약과, 법제처 등의 조약 용어집 등을 참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용어집 등의 최신 공개본은 찾아볼 수 없으며 해당 기관이 분리되기 이전인 외교통상부의 관련 자료 및 용어집 등에서 품질지표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의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32223호), 국회법제실의 법제이론과 실제(2019),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2017) 등 다양한 입안 및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조약의 경우 한글본 작성 및 심사와 관련한 명시적 지침이 없이 과거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 및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정갑용, 유상현, 설계경 2009: 3).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외부에 공개된 유일한 품질 관련 원칙 또는 지침으로, 외교통상부가 발간한 ‘알기 쉬운 조약업무’(2006)¹⁸⁾의 한글 조약문 작성 원칙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영문본 주요 용어집’(2007)에 규정된 품질지표를 살펴보았다.

먼저, ‘알기 쉬운 조약업무’의 한글 조약문 작성 원칙의 경우 명시적인 품질지표가 나열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확성’과 ‘가독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즉, 한글 조약문 작성 시 정보이든 번역본이든 ‘우리말로서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 외국어로 된 조약문과 대비하여 법문으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에 가감이 없어야’ 한다면서, 외국어 조약문을 ‘해석’하거나 ‘직역’함으로써 뜻이 안 통하는 한글 조약문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외교통상부 2006: 36). 특히, 상기 원칙의 경우 ‘자연스러운 우리 글’에 방점을 둔 ‘가독

17) 2013년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분리되면서, 일반 조약은 외교부가, FTA와 같은 통상 관련 조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기관이다. 양자조약의 경우 한글본은 주로 정부의 지위를 가지는 반면 다자조약의 경우 공식번역의 지위를 갖지만, 공식번역인 조약 한글본의 경우에도 정보에 준하는 품질지표가 적용된다.

18) 동 문서는 한·EU FTA, 한·미 FTA 번역오류 사태 시 언론에서 주요 번역 품질 원칙으로 다룬 바 있다.

성' 지표를 강조하는데, 제시된 5가지 작성(번역) 유의 사항에서도 가, 라의 경우는 정확성을, 나머지 항목인 나, 다, 마의 경우는 가독성을 강조한 내용에 해당하여, 가독성 관련 항목이 더욱 많았다(표 6 참조).

〈표 6〉 외교통상부 알기 쉬운 조약업무(2006: 36-37)

	구분	내용
가	외국어로 된 조약문이 담은 뜻을 가감하지 않을 것	경우에 따라 짧은 표현을 긴 표현으로 또는 그 반대로 하여야 할 필요도 있음
나	가급적 순수한 우리말로써 자연스러운 흐름을 지닌 문장으로 표현할 것	경우에 따라 수동태를 능동태로, 복수를 단수로 또는 각각 그 반대로 표현해야 될 때도 있음
다	자연스러운 우리 글인 동시에 법문식 표현을 쓸 것	우리 국내 법령에서 쓴 법조문을 참고할 것
라	수식 또는 형용을 위한 구·절의 내용이 긴 경우, 그 수식·형용의 대상이 되는 말과 타요소(같은 문장 내)와의 관계를 분명히 할 것	특히, 주어와 동사 사이에 긴 형용사절, 부사절 또는 목적절이 들어가는 경우 의미상 혼동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문장의 구성이나 구두점 사용 등에 각별히 유의할 것
마	필요한 경우 '의역'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의역'이라도 할 것	이는, 우리말로써 뜻이 통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문으로서의 의사전달 목적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임.

다음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영문본 주요 용어집'(외교통상부 2007)의 경우는, 정확성 지표(가), 가독성 지표(나), 일관성 지표(다)가 모두 제시되어 있어, 정본번역의 품질지표 항목 요건은 일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표 7 참조). 그러나 <표 6>과 <표 7>에 제시된 내용은 상기에서 논의한 정본번역의 품질지표와 개념 및 적용 우선순위 면에서 차이가 있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표 7〉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영문본 주요 용어집(외교통상부 2007)

	구분	내용
가	국문본과 영문본 사이의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소의 어색함을 감수하더라도 영어에 상응하는 한국어를 모두 기입하도록 노력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도 가급적 살리고, 단어나 문구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국문 해석상 문제가 없으면 모두 표현되도록 노력

나	국문본도 정보임을 감안, 우리말 문법에 맞지 않거나 관용상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및 문맥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상황에 맞게 국문화	이 경우에도, 영문본상 없는 의미를 추가하는 등의 의역은 가급적 지양 - 법제처 지침에 따라 가급적 한글을 사용
다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하나의 장에서 동일한 영어 문장 및 단어는 가급적 동일하게 국문화	영문본상 용어에 상응하는 국내법령상 용어가 있거나 담당하는 부처에서 통용하는 용어가 있는 경우, 해당 용어 사용

우선, ‘정확성’ 지표와 관련한 핵심 개념의 수정이 필요하다. <표 6>의 ‘뜻을 가감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은 정확성의 개념을 언어본 간 ‘동일한 의미’의 전달로 제시하고 있으나, 법률번역에서 정확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미상 등가(semantic equivalence)’가 아닌, 언어본 간 동일한 법적 효과를 생산하도록 번역하는 것, 즉 ‘법적 등가(legal equivalence)’의 달성으로 정의된다(Šarčević 2000: 333). 즉, 정확성은 언어 자질 상의 동일성이 아닌, 동일 법률의 여러 언어본이 하나의 사건에 적용되더라도 동일한 법적 결과가 도출될 때 달성되는 품질지표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보번역의 핵심 품질지표 가운데 정확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지목되는 일관성 지표가 아예 제시되지 않거나, 적용 범주가 매우 제한적이다. 용어 일관성은 제도 법률번역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보내 용어 및 표현의 일관성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단일 문서의 동일 해석 및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Šarčević 2018: 14). 상기 <표 7>의 경우 일관성 지표는 제시되어 있으나, 해당 범주를 동일 텍스트 내의 ‘하나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정보번역에서 용어의 조율은 해당 텍스트 내 뿐만이 아니라, 이미 수립된 관련 법령과의 조율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유정주 2019: 176-177). 또한 기존에 번역된 전례와의 일관성까지 고려할 경우, 해당 번역을 규율하는 관련 지침이나 전례집, 스타일 가이드, 매뉴얼 등과의 일관성까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일관성의 적용 범주를 확장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연스러운 우리 글’이나 ‘의역’, ‘반의역’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가독성 관련 개념을 ‘명확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유럽인권재판소(EctHR) 판례상 법령의 명확성 기준¹⁹⁾은 ‘예측가능성’으로, 이는 법원에서 해당 조문을 어

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를 국민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조문이 법원의 해석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즉 ‘애매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면’ 이는 ‘충분히 명확하다’고 간주된다(Schilling 2010: 49). 따라서 ‘자연스러움’이나 ‘가독성’ 등은 법적 명확성 달성을 위한 요건에 해당하며, 명확성 개념은 ‘해석상 애매성을 발생시키지 않는 번역’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 외교통상부 자료의 경우 <표 6>에서는 필요할 경우 의역, 반의역을 허용하는 등 가독성을 강조하다가, <표 7>에서는 의역을 지양한다고 규정하는 등 기관 내 지침의 내용도 상이하여 내부 의견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다. 제도 법률번역에서 품질지표는 기관의 모든 거시, 미시적 층위의 번역 품질과 관련된 핵심 개념으로, 모든 관련 지침에 반드시 통일성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핵심 지표 간 적용 우선순위를 함께 제시하여, 모든 품질지표의 동일한 적용이 어려울 경우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 국민이 수신자 및 수범자가 되는 정보번역의 경우, 수범자가 허용 및 금지 행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가독성과 관련한 법적 명확성을 핵심 품질지표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적 효력을 갖는 정보번역의 경우 정확성 및 일관성은 명확성에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품질지표로, 국제 분쟁이나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언어간 일치’의 보장이 번역 시 최우선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Šarčević 2000: 336; Cao 2007: 152). 아래 <표 8>은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 조약 한글본 작성(번역) 품질지표 예시이다.

<표 8> 조약 한글본 작성(번역) 품질지표 예시

텍스트 유형	조약 (조약, 규약, 헌장, 규정, 협정, 협약, 의정서, 교환각서, 양해각서 등)
번역본의 지위	정본 또는 공식번역
의도된 수신자	직접수신자: 법원, 간접수신자: 일반 국민
주무기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개 여부	공개

- 19) EctHR 판례는 법령의 법적 명확성 기준으로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규정하는데, 이 가운데 접근성 기준은 수범자인 국민이 해당 권리와 의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본번역이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형식적 요건이다.

관련 규정, 지침 및 템플릿 ²⁰⁾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법령입안·심사기준, (기관 간) 조약한글본 작성매뉴얼, (기관 간) 조약한글본 스타일가이드, (기관 간) 조약한글본 용어집, (기관 간) 번역메모리, 자유무역협정 주요 용어집	
결과물 품질지표	핵심 개념	주요 내용
정확성	법적 등가	언어본 간 동일한 법적 효과 생산
일관성	용어 일관성	1) 텍스트 내·외의 용어 일관성 2) 전례 및 관련 지침과의 일관성
명확성	접근성 및 예측가능성	애매성을 발생시키지 않는 번역
지표 간 우선순위	정확성, 일관성 > 명확성	

5. 결론 및 제언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제도 법률번역의 경우 명시적인 기관 내·기관 간 품질지표의 수립 및 관련 기관의 공유가 품질보장의 기초 작업이다. 제도 법률번역에서는 제도적 통일성(*institutional uniformity*), 즉 표준화 달성이 결과물 품질의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텍스트 제작(번역) 지침, 용어집, 스타일가이드 등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이 규범화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보번역의 경우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모든 주무기관이 동일한 품질지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품질지표가 명시된 기관 간 품질지침 수립이 필수적이다. EU의 경우 경성규범의 정보번역은 물론, 참고 목적의 모든 텍스트 유형에 대해서도 모든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엄격한 품질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함으로써, 모든 번역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들이 핵심 품질지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보번역의 품질지표는 모든 제도 법률번역 품질 관련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모든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외주업체 등이 공유할 수 있는 명시적인 품질지표의 수립 및 공개가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제도 법률번역기관

20)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법령입안·심사기준, 자유무역협정 주요 용어집을 제외한 나머지 지침들은 *Manual of Precedents, Interinstitutional Style Guide* 등 DGT의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가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명시적인 품질지표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공개된 지표의 경우에도 법률 번역학의 기존 논의 결과와 부합하지 않거나 기관 내부마저 일관성있는 품질지표를 적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최근 10여 년간 서구 법률번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제도 법률번역의 개념, 범주 및 특성을 제시하고, 제도 법률번역의 궁극적 목적인 번역 품질 향상을 위한 기본 사안으로서, 품질 관련 모든 층위의 핵심을 이루는 품질지표에 대한 메타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제도 법률번역을 ‘정부의 통치기능의 일환으로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수행되는 법률번역’으로 정의하고,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을 텍스트 종류와 주무기관에 따라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제도 법률번역의 품질지표를 정확성, 일관성, 명확성으로 도출하고, 각각의 지표에 대한 핵심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러나 상기의 품질지표는 번역의 지위, 목적, 수신자, 텍스트의 종류 등 상황별 소통요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번역의 목적에 따른 품질지표를 상세히 규정한 DGT의 번역품질기준 등을 참고하여, 한국과 같은 단일어 국가의 제도 법률번역에 적용가능한 텍스트 유형별 품질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사례 연구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번역기관으로 하는 조약 정보번역의 품질지표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지면 제약으로 다루지 못한 기타 기관의 번역 품질지표 관련 분석은 제도 법률번역 품질보증과 관련한 후속연구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본고의 내용이 한국의 제도 법률번역 기관의 품질지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되어, 기관의 번역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12) 「번역에 대한 제도적 관점의 중요성 고찰: 제도번역 개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7-32.
- 국회법제실 (2019) 『법제 이론과 실제』, 전면 개정판, 서울: 국회법제실.
- 유정주 (2012) 「법령어의 애매성과 번역가의 해석문제: 대한민국법령의 ‘등’,

- ‘맞’, 가운데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109-141.
- 유정주 (2017) 「다문화사회의 공문서 번역 전략—민원서식 한영번역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5: 41-75.
- 유정주 (2019) 「정본번역의 용어일관성 사례연구—투자보장협정의 법인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3(4): 169-201.
- 유정주 (2020) 「법률번역에서 등가의 의미와 비교법적 분석사례—‘특수관계인’의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4(4): 63-95.
- 이지은, 최효은, 박혜진 (2021) 「한영 법령번역 스타일에 대한 제언: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의 법령번역 지침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5(1): 177-216.
- 전훈 (2022) 「공공서비스와 행정법—프랑스 공공서비스 이론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39: 43-64.
- 정갑용, 유상현, 설계경 (2009) 『조약체결과정에서의 관계 정부기관의 역할 및 법제처 조약심사 강화를 위한 심사매뉴얼 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 법제처.
- 정호정 (2013) 「공공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시스템 연구—유럽연합 3대 번역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15(2): 215-248.
- Alcaraz, Enrique and Brian Hughes (2001) *Legal Translation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Biel, Łucja (2014) *Lost in the Eurofog: The Textual Fit of Translated Law*,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Biel, Łucja (2017) ‘Quality in Institutional EU Translation: Parameters, Policies and Practices’, in Tomáš Svoboda, Łucja Biel and Krzysztof Łoboda (eds) *Quality Aspects in Institutional Translation*, Berlin: Language Science Press, 31-58.
- Biel, Łucja (2018) ‘Genre Analysis and Translation’, in Kirsten Malmkjær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and Linguistics*, London: Routledge, 168-182.
- Cao, Deborah (2007) *Translating Law*,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Cao, Deborah (2010) ‘Legal Translation, Translating Legal Language’, in

- Malcolm Coulthard and Alison Johnson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Forensic Linguistics*, New York: Routledge, 78-91.
-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DGT), European Commission (2015) DGT Translation Quality Guidelines. Available at https://ec.europa.eu/translation/maltese/guidelines/documents/dgt_translation_quality_guidelines_en.pdf.
- Filson, Lawrence E. and Sandra L. Strokoff (2008) *The Legislative Drafter's Desk Reference*, second edition, Washington, DC: CQ Press.
- Gouadec, Daniel (2010) *Translation as a Profession*, second edition, Philadelphia: Johns Benjamins.
- Hammel, Andrew A. (2008) 'Legal Translation, the Plain Language Movement, and English as a Lingua Franca', in Frances Olsen, Alexander Lorz, and Dieter Stein (eds) *Language and Law: Theory and Society*, Düsseldorf: Düsseldorf UP, 275-290.
- ISO 17100:2015 (2015) Translation Services - Requirements for Translation Services. Geneva: ISO. Available at http://www.iso.org/iso/catalogue_detail.htm?csnumber=59149.
- Koskinen, Kaisa (2014) 'Institutional Translation: The Art of Government by Translation', *Perspectives* 22(4): 479-492.
- McLeod, Ian (2009) *Principles of Legislative and Regulatory Drafting*, Oxford; Portland, OR: Hart Publishing.
- Niska, Helge (2002) 'Community Interpreter Training: Past, Present, Future', in Giuliana Garzone and Maurizio Viezzi (eds) *Interpreting in the 21st Centur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msterdam: Benjamins, 133-144.
- Prieto Ramos, Fernando (2014a) 'Legal Translation Studies as Interdiscipline: Scope and Evolution', *Meta* 59(2): 260-277.
- Prieto Ramos, Fernando (2014b) 'International and Supranational Law in Translation: From Multilingual Lawmaking to Adjudication', *The Translator* 20(3): 313-331.
- Prieto Ramos, Fernando (2015) 'Quality Assurance in Legal Translation: Evaluating Process, Competence and Product in the Pursuit of

- Adequacy’,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emiotics of Law* 28: 11-30.
- Prieto Ramos, Fernando (2017) ‘Global Law as Translated Text: Mapping Institutional Legal Translation’, *Tilburg Law Review* 22(1-2): 185-214.
- Prieto Ramos, Fernando and Diego Guzmán (2021) ‘Examining Institutional Translation through a Legal Lens: A Comparative Analysis of Multilingual Text Production 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arget* 33(2): 254-281.
- Sager, Juan C. (1997) ‘Text Types and Translation’, in Anna Trosborg (ed.) *Text Typology and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25-42.
- Šarčević, Susan (1997) *New Approach to Legal Translation*,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Šarčević, Susan (1998) ‘Creativity in Legal Translation: How Much Is Too Much?’, in Andrew Chesterman, Natividad Gallardo, San Salvador and Yves Gambier (eds) *Translation in Context: Selected Contributions from the EST Congress, Granada 1998*, Amsterdam: Benjamins, 281-292.
- Šarčević, Susan (2000) Legal Translation and Translation Theory: A Receiver-Oriented Approach. Available at <https://www.tradulex.com/Actes2000/Šarčević.pdf>.
- Šarčević, Susan (2012) ‘Challenges to the Legal Translator’, in Peter M. Tiersma and Lawrence M. Solan (eds) *The Oxford Handbook of Language and Law*, Oxford: Oxford UP, 187-199.
- Šarčević, Susan (2018) ‘Challenges to Legal Translators in Institutional Settings’, in Fernando Prieto Ramos (ed.) *Institutional Translation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Enhancing Quality in Multilingual Legal Communication*, London: Bloomsbury, 9-24.
- Schäffner, Christina, Luciana Sabina Tcaciuc and Wine Tesseur (2014) ‘Translation Practices in Political Institutions: A Comparison of National, Supranational,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Perspectives* 22(4): 493-510.
- Schilling, Theodor (2010) ‘Beyond Multilingualism: on Different Approaches to

the Handling of Diverging Language Versions of a Community Law',
European Law Journal 16(1): 47-66.

Scott, Juliette R. (2019) *Legal Translation Outsourced*, New York: Oxford UP.

Stefanou, Constanin and Helen Xanthaki (2008) *Drafting Legislation: A Modern Approach*, London: Routledge.

Taibi, Mustapha (2011) 'Public Service Translation', in Kirsten Malmkjær and Kevin Windle (eds) *The Oxford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Oxford: Oxford UP, 214-217.

Wagner, Emma, Svend Bech and Jesús M. Martínez (2002) *Translating for the European Union Institutions*, Manchester: St. Jerome.

[Abstract]

Institutional Legal Translation in Korea: Concept, Scope, Quality Indicators

Jeong-ju Yoo
(Handong University)

In the era of multilingual law making and law enforcement, legal translation conducted in institutions at national, international and supranational levels has been at the core of legal translation studies over the past decad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cept, scope and quality indicators of institutional legal translation with special attention on improving its quality in Korean settings. Based on the academic literature and the European Commission's Translation Quality Guidelines, this study identifies three key quality indicators or parameters, i.e. accuracy, consistency and clarity, with prioritized, fit-for-purpose rules depending on the legal status, communicative purpose, recipient, and text type of the translation. In order to apply such indicators with necessary modifications to Korean institutions, this study presents the genre taxonomies of institutional legal translation in Korea and suggests key indicators and the priority of their application in the case of authentic and non-authentic translation produced by Korean institutions.

Keywords: legal translation, institutional translation, translation institution, translation quality, translation quality indicators

주제어: 법률번역, 제도번역, 번역기관, 번역품질, 번역품질지표

유정주

한동대학교 공익법센터 위촉연구원

jeongjuy@naver.com

관심 분야: 법률번역, 번역교육, 전문용어학, 코퍼스언어학

논문 투고: 2023년 1월 30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3월 7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3월 15일

게재 확정: 2023년 3월 26일